

#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박혜경·국미애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I.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III. 차별의 이해
- IV. 자치법규에 나타난 명시적 차별
- V. 자치법규에 나타난 결과적 차별의 소지
- VI.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 가치관
- VII. 강행규정으로의 변경 필요

<참고문헌>

<부록>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젠더 정책의 주류화 전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조례 및 규칙 등이 젠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어 시정케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자치법규 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이는 인천시에서 양성평등한 시정을 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임.

\* 연구진 : 박혜경(여성개발센터 연구위원), 국미애(여성개발센터 초빙책임연구원)

## II.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연구의 방법 : 인천광역시 및 군구 자치법규집 검토, 차별 관련 법률 및 기존 논의 검토(검토 조례 및 규칙의 목록은 <부록> 참조).
- 연구의 한계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에 한정하여 자료를 검토함. 자치법규집 제공 시점을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였음에도 5개 구에서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아 검토할 수 없었음.
  - 성차별에 한정.
  -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국민의 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우대·배제·구별 및 불리한 대우를 차별 행위로 보고 있음.
  - 향후 자치법규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검토는 성차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영역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검토 과정에서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일부 검토하였음.

## III. 차별의 이해

### 1) 성차별 금지의 근거법

-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법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임.
-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성차별 금지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영역을 한정하지 않은

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 영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도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명문화하고 있음.

○ 헌법

-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0조 제2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인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여성발전기본법

- 제1조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및 관련 법규가 젠더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2조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의무의 이행 주체를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별 금지 의무가 강화·구체화되었음.

○ 근로기준법

-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 제2조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 제2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2) 직접차별

- 직접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유로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 즉, 성차별은 특정 성이라고 해서 혹은 특정 성이 아니라고 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차별은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기초로 하여 의도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서 기인함. 직접 성을 명시하기 때문에 차별을 밝혀내기가 쉬움. 성차별 반대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고용 영역에서의 예를 들면, 과거 여행원 제도, 결혼 및 임신 출산 퇴직제, 여성조기(早期)정년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여행원 제도는 입직 과정에서부터 남녀차별을 제도화 한 대표적인 고용차별로, 남성은 행원으로 채용하는 반면 여성은 ‘여행원’으로 별도 채용하여 차등적인 호봉과 승진 체계를 적용한 제도임.<sup>1)</sup>
- 결혼 및 임신 출산 퇴직제는 여성근로자가 결혼 혹은 임신을 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한 대표적인 제도임. 여성조기(早期)정년제도 여성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게 규정하여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성별을 기준으로 삼지 않지만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서의 정년을 다른 직급보다 낮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의 조기 정년을 결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제도로 비판되어 옴.
- 그러나 차별의 성격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서 직접차별을 금지하는 법망을 회피하는 방식의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변화됨에 따라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 또한 의도성이 있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통념, 관습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 개념과 판단 기준이 만들어졌음.

### 3) 간접차별

- 간접차별은 성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즉 특정 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차별로 보는 개념임.

---

1) 예컨대, 승진시험에서 남성행원은 상위 직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여성은 일단 ‘행원’ 시험을 통과해야만 상위 직급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음. 이러한 방식의 차별은 그 영향이 단지 승진이라는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임. 임금, 배치, 교육 및 연수, 퇴직에 이르도록 차별의 영향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음.

-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간접차별 금지가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고용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음.<sup>2)</sup> 고용, 교육, 재화,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2003년 4월 간접차별 금지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 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 고 하고 있음.
- 행위불법이 아니라 결과불법에 주목하는 간접차별이 법제화됨으로써 차별의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대해서도 그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됨(이승욱, 2003:30~31).
- 그러나 현재 간접차별 규제는 법조항으로만 존재할 뿐 정책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조항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을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현저히 적’ 은 정도나 ‘불리한 결과’ 의 정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일반적으로 법조항에 대한 해석은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간접차별에 대한 소송은 제기된 적이 없음.
- 최근 서울지방법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의 ‘이원 직군제’<sup>3)</sup>가

2) 구체적인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3) 하나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원 직군제’는 직원들을 ‘종합직’과 ‘플로어마케터/클러크(FM/CL)’로 나뉘어 어느 직군으로 입사했는지에 따라 임금과 승진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

간접적인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하나은행이 ‘이원 직군제’가 성차별이 아니라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인 처우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노동청의 결정을 반박,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sup>4)</sup> 이 과정에서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법과 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간 간접차별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책적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음.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의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범조항을 근거로 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단 기준을 인용하고자 함. 지금까지 제시된 간접차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차별의 의도성 여부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가장 큰 차이는 차별의 의도가 있었는가, 혹은 차별의 의도를 입증했는가와 관련된 것임. 직접차별과 달리, 간접차별에서는 차별의 의도보다는 차별의 결과를 중시함.
- 간접차별 개념은 편견이 종종 무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행위는 의도해서보다는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함.
- 이에 간접차별 개념에서 차별의 피해자는 행위자의 차별 의도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 중립적인 관행이나 기준, 절차가 특정 집단에 차별적인지 여부는 그것이 채택된 동기가 아니라 그것이 작용하는 결과와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로, 현재 종합직에는 남성이 93.3%, FM/CL에는 여성이 97.7%의 분포를 보인다. 이 제도는 그간 여성운동단체와 여성노조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간접차별 사례로 비판되어 왔다.

4)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8일자. “‘하나은행 성차별’ / 사무직엔 남성 93%·창구직엔 여성 98%.”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genl\\_html/search.jsp](http://www.kinds.or.kr/genl_html/search.jsp).

## (2) 중립적 기준의 불평등한 효과

- 어느 정도의 불평등한 효과를 차별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법은 통계적 규칙을 통한 차별의 입증.
- 미국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EEOC')는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통계적 불균등의 정도를 '4/5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에서는 이에 의한 차별 입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4/5규칙'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소수 집단의 비율이 다수 집단 비율의 4/5(80%)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은 소수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 '불평등 효과(adverse impact)'를 야기한 것이고, 따라서 그 기준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임.
- 예컨대, 여성 승진자 비율이 남성 승진자 비율의 4/5 미만이면 여성이 불평등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여성은 승진대상자 12명 중 3명만이 승진한 데 비해 남성은 25명 중 15명이 승진했다면, 여성의 승진비율 25%는 남성의 승진비율 60%의 4/5인 48%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 기준이 성중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승진 결정 과정에 성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EEOC, 1995:8).<sup>5)</sup>
- 통계적 불균등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별로 세분화된 통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별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별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성별로 세분화된 통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임.

---

5) 간접차별을 systematic disparate impact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임. 미국의 보우만 대 블록(Bouman v. Block, 930 F.2d 1211, 9th Circuit, 1991) 판례와 피에트라스 대 파밍빌(Pietras v. Board of Fire Commissioners of the Farmingville Fire District, U.S 2nd Circuit of Appeals, 1998) 판례에서는 불평등한 효과를 입증함에 있어 4/5규칙을 이용했음. 이 규칙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법원에서도 표본 집단이 너무 작을 때에는 이 규칙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표본 집단이 적정 규모라고 여겨질 경우 또는 표본 집단은 작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 경우 4/5규칙은 불평등한 영향을 파악하는 유의미한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한승희, 2000:35~40).

- 그런데 간접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간접차별이 통계적 수단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통계는 간접차별을 입증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간접차별 개념이 차별 의도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적 불균등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성별에 따른 기존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차별적인 통념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임.
- 여기서 기존 통념을 구성·강화하는 것으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오랜 관행, 일반적인 사회적 사실로 인정되는 것, 주관에 의한 판단 등도 포함됨. 일종의 선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라 입증이 필요없는 경우를 의미함.
- 간접차별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중립적 관행이나 기준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함.

### (3) ‘사업상 필요성’ 또는 ‘직무 관련성’

- 간접차별 소지가 제기되면 사용자는 문제가 된 그 기준이 ‘사업상 필요성 (business necessity)’ 이 있거나 또는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능력과의 관련성(직무관련성, job-relatedness)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여기서 ‘사업상 필요성’ 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됨. 간접차별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법원은 ‘사업상 필요’ 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라는 차원의 ‘사업상 편의(business convenience)’ 를 구분하고 있음. 즉,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정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업무의 본질(essence)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에만 한정하여 ‘사업상 필요성’ 을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사업상 필요성’ 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 판례를 통해 계속 변화·발전하고 있음. ‘사업상 필요성’ 개념은 하나의 고정된 기준을 갖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의되는 사법적 판단임 (Sauls, 1995).

- 중요한 것은 특정 업무, 특정 자격 기준 등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는 것임. 이에 사안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4) 대안적 기준

- 간접차별 소송 과정을 보면, 사용자가 ‘사업상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이 즉시 기각되지는 않음. 원고가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합법적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음을 보이고, 그 대안을 사용자가 채택하기를 거부했음을 보인다면 간접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미국을 비롯하여 간접차별을 다루고 있는 유럽 국가의 법에서도 “만일 사용자의 합법적 목적(legitimate objectives)이 차별적이지 않은 혹은 덜 차별적인 방법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취한 차별적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Hunter, 1992:237)”고 규정하고 있음.

#### 4) 차별의 예외

-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 혹은 불평등 효과가 모두 위법한 차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한 차별로 보지 않음.
- 첫째,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에 기초한 경우로, 특정한 직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경우임. 영국의 경우 BFOQ와 유사한 개념으로 진정직업자격(Genuine Occupational Qualification, GOQ)을 차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의 본질적 속성이 연극이나 기타 예술관련 업종에서 신체적 이유로 반드시 특정한 성을 필요로 하여 만약 다른 성이 그 일을 수행하면 본질적으로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 등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sup>6)</sup>.

6) 예컨대, 정자 기증자나 젖먹이 유모 등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특정 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정함(정금나, 1998:31~32).

- 둘째, 과거로부터 축적된 차별을 수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한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 차별 수정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위법한 차별로 보지 않음.
- 셋째, 모성 보호를 위한 차등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차별로 간주하지 않음.

#### IV. 자치법규에 나타난 명시적 차별

-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접적으로 성을 명시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 차별로 봄.

##### 1)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 검토 결과 직접적으로 성을 명시하여 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이는 성이 가시적으로 매개된 직접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규제의 성과라 할 수 있음.
- 단, 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의 복제 규정 조항과 업무분장, 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됨.

**제14편 직속기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 여성대원의 정복 하의를 남성과 달리 '스커트'로 규정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91조<sup>7)</sup>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조례 제18조<sup>8)</sup>의 규정에 의하여 대원의 제복을 의소복, 의소모, 의소화,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형식과 제식 및 재질을 <별표3>과 <별도6>에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별표3>에 의하면,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의 제복 양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남성대원의 하의는 ‘긴 바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여성대원의 하의는 ‘스커트 형식의 통치마’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함에 있어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의 하의가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불필요한 구별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에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7) 소방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입면·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8)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복제) ①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복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원에게 지급한다.  
 ③대원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의용소방대업무분장

구분	부명	반명	분장사항	
의용소방대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대상물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여성의용소방대	홍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호부		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응급조치	
		구호반	1. 이재민 위원활동 2. 이재민 가료조치	

- 소방법 제86조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즉 의용소방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구별하여 업무를 분장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알기 어려움.

- 이는 불필요한 구별로, 예컨대 총무부나 방호부, 지도부의 업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의 참여를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낳음. 이는 직접적으로 성을 명시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명시적 차별에 해당함.

**제6편 자치행정**  
**인천광역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6조(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여직원(여직원 중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 위 조례는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을 제외한 모든 여직원을 비상근무제외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보호를 명분으로 한 여성 배제임.
-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여성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즉 요보호자라는 인식을 형성·강화하여 오히려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보호 조치라 판단됨.

## 2) 군구 자치법규

- 군구의 자치법규에서도 명시적으로 성을 매개로 한 차별적 조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음.
- 그러나 강화군의 자치법규에서 인천광역시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의 복제 규정과 유사하게 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조항이 발견되었고, 중구의 자치법규에서 여성 참여를 명백히 제한하는 명문화된 조항이 발견되었음.

**제15편 관광개발**  
**강화군강화전적지관리사무소근무자복제규정**  
 - <별표>의 그림에 의하면, 하복 규정에 있어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하의를 남성은 바지로, 여성은 치마를 입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강화 전적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제를 통일시켜 근무 중 착용하게 함으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을 베풀어 전적지를 찾는 관람객 누구나 강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이 규정에 의한 복제는 안내원, 매표원, 문화재 감시원, 청소경비 및 안내 경무 요원에게 적용됨.
- 이 조례도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하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내원이나 매표원, 문화재 감시원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하의를 입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이는 기존 통념에 따른 명시적 차별로 판단됨.

**제6편 도시**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sup>9)</sup>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위원의 30%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법률·세무·회계·건축·토목·설비·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9)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명시적 차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30% ‘이내’ 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조임. 이는 여성 참여 보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효과는 여성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분쟁 조정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입장을 반영하고자 한 취지로 위와 같은 비율 규정을 삽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발현되어서는 안 됨. 여성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대부분 20% ‘이상’ 혹은 30% ‘이상’ 으로 되어 있지, ‘이내’ 로 정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음. 위 조항은 성을 명시하여 여성을 구별, 여성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차별이라 할 수 있음.

## V. 자치법규에 나타난 결과적 차별의 소지

-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결과적 차별 또는 간접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봄.
- 여기서 “간접차별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고 “간접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앞서 보았던 간접차별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임.
- 예컨대, 누군가가 인천시의 자치법규 중 어떤 조항에 대해 간접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상 필요성’ 을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입증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해당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차별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혹은 덜 가져오는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럼에도 인천시가 해당 조항의 수정을 거부했는지 등 간접차별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항이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

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남녀차별로 본다”는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그 기준은 성중립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로 함.

- 검토 결과, 결과적 차별의 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 예컨대, 어떤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한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임.
- 이는 그 기준에 성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그에 해당하는 집단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임. 예컨대, ‘3급 또는 4급,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임.<sup>10)</sup> 일차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규정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였음.
- 그러나 그러한 기준 모두를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름. 별도의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위원회에는 바로 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들이 있기 때문임. 심사, 심의, 평가 등을 위해 구성하는 조례 및 규칙이 그 예임.
- 특정 분야에 대해 심사나 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임. 또한 심사나 심의, 평가 등의 과정은 단순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거나 예산 배분 작업을 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

10)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라 입증이 필요없는 경우를 사실상의 “법정 인지(judicial notice)”라 함. 이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도 필요없는, 일반적인 사회적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영국제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는데, 피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다른 집단의 비율보다 상당히 적은 비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사례 자체의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통계적인 입증 방법이 한 단계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음(조순경 외, 2002:59).

판단됨. 이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은 제외하기로 함.

- 단, 위원의 자격 중 ‘조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와 같이 전문성을 인정함에 있어 반증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분류하였음. 위와 같은 규정에 부합하는 집단이 남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은 별도의 입증이 없어도 알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분류한 규정들은 특정한 분야를 지칭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시정(구청)과 관련된 부분과, 특정 분야를 지칭했지만 그것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조례 및 규칙임.
- 검토 결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또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하였음.

## 1)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 제3편 감사

####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3조(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기타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 당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와 청구 내용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7에 의거하고 있음.
-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은 매우 구체적이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호와 5호임.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일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배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요건이 결과적 차별이 아니기 위해서는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조교수 이상’이라는 기준은 취업상태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기준이지 전문성을 보증하는 기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예컨대, 해당분야의 강사나 조교수 이상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조교수 이상’인 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5호의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일반적으로 4급이나 5급인 자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3급 이상’의 고위 직급으로 규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결과적 차별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현실적으로 감사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조교수 이상’인 여성이나 ‘3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인 여성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증되기 어려움. 하지만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이라는 요건은 전문성을 보증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4편 정책투자진흥**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설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sup>11)</sup>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앞서 살펴본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조례도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즉 4호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는 요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장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1호의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반드시 ‘4급 이상’ 의 고위 직급으로 규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 비

1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율이 현저히 적음. 더욱이 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이거나 ‘4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인 여성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우나, 전문성 보증과는 관련없는 요건 제시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4편 정책투자진흥**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2. 시 소속 공무원(실·국장 이상)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단, 당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
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 위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 중 3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음. 앞서 지적했듯이 굳이 ‘대학교수’ 라는 요건이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성을 확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오히려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증하면서 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이라고 판단됨.
- 특히 현실적으로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인 여성이 드물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증되기 어려움. 하지만 “대학교수” 라는 요건은 전문성 보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6편 자치행정

### 인천광역시세조례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3.29 조례제3733호)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서 4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에 여성이 해당될 확률은 남성이 해당될 확률보다 현저히 적음. 또한 ‘조교수 이상’이라는 요건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직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더욱이 5호에서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4호 규정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있음. 이에 4호 규정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5조의3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같은 이유로 ‘조교수 이상’이라는 요건은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제6편 자치행정

### 인천광역시세조례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에서 5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부교수 이상”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부교수 이상’이라는 요건이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반증의 여지없이 보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6호에서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한 요건이 오히려 전문성을 보증할 뿐 아니라 5호의 내용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1편 도시계획**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위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1항<sup>12)</sup>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3호 중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의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

12)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1편 도시계획**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9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례 제6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의 1호와 5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음.
- “조교수급 이상인 자” 라는 요건은 전문성을 보증하기 어려운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라는 자격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오히려 1호는 불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5호의 “5급 이상의 공무원 7년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라는 요건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적음. 더욱이 이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 이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이며,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여성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우나, 전문성을 보증하기에 불충분한 위와 같은 요건 제시는 오히려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2편 환경녹지**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 응용지질학, 수문학,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위 조례에서는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자격 중 2호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라는 조항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3호에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 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는 조항이 있음을 볼 때, 2호는 불필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현실적으로 위에 열거한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조교수 이상’ 인 여성은 더더욱 드물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함.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증되기 어려움. 하지만 “대학교수” 라는 요건은 전문성 보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5편 사업소**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획단장이 위촉한다.

1.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2. 도시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또는 직계 권위자
3. 기타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 위 조례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여기서 1호의 규정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하거나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는 것이 전문성을 보증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대학교수”라는 요건을 두어 결과적 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현실적으로 도시철도 등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교수”라는 구체적 요건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외에 결과적 차별의 소지와 함께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조례 및 규칙도 있음.

**제1편 의회**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2호에서는 위원장 선임시까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며, 인식의 수준에서나 현실의 수준에서 정치 참여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왔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연장자’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남성일 확률이 매우 높음.
- 또한 우리 사회에서 연장자 우대는 유교적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들여져 왔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듦’ 에 대한 우대는 더 많은 경험과 연륜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함.
- 그러나 이것이 법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법 앞의 평등’ 이라는 근대법의 원칙과 충돌하게 됨(국가인권위원회, 2003:128). 즉, 합리적이 이유 없는 구별과 배제, 불리한 대우와 마찬가지로 ‘우대’ 도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우대’ 의 이면에는 우대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종 따르기 때문이기도 함.

**제1편 의회**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 위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3차까지 1차와 2차 투표를 거치고 결선투표까지 실시했음에도 최고득표자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자를 단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앞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장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남성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투표의 결과가 동점을 반복할 때, 최종 당선자를 정하는 기준을 ‘연령’으로만 삼는 것이 합리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연령이라는 요건 이외의 대안적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제6편 자치행정**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위 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다음의 <별표1의2>에 정하고 있음.

**[별표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 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 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

진다” 고 규정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음. 공무담임권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함(헌재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38).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 응시연령은 그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시기회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된다” 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응시연령과 그 기준일을 정할 때 국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청이라 밝히고 있음.<sup>13)</sup>
- 한편 연령제한의 목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공무원조직의 안정화’ 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방법이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오히려 공무원 조직의 경우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한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의 안정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국가인권위원회, 2003:132~133).

**제6편 자치행정**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신규임용)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 위 조례는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호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칭함.

13)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ourt.go.kr/information/precedent.asp>.

-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 하고 하여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음.

<p><b>제12편 환경녹지</b>  <b>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b>          제4조(협의회의 기구와 임원) ②협의회는 3인의 공동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두며,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기업 및 시 대표가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명의 상임회장을 두어 회무를 관장토록 하되 상임회장은 회장 중에서 선출한다.</p> <p>③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④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에 의한다.</p>
--

- 위 조례는 21세기 인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해 시민·기업·인천광역시가 협의하여 작성한 “인천의제 21”을 실천하여 살기 좋고 활기찬 인천을 조성해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인천광역시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함.
- 상임회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제4조 제4항에서는 공동협의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장자’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여성보다 남성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2) 군구 자치법규

- 중구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함. 중구 자치법규에서 차별 소지가 많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구명만 달라질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

문임. 이에 타 구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을 경우 구명과 해당 조례 및 규칙 명을 명기하기로 함.

- 중구에는 없지만, 차별 소지가 있는 다른 구의 조례 및 규칙은 별도로 언급, 검토하였음.

## 제2편 기획감사

### 인천광역시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sup>14)</sup> 인천광역시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앞서 살펴본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조례도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즉 4

1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는 요건과 1호의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라는 요건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증한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규제개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자격을 ‘조교수 이상’,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규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즉 ‘사업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제2편 예산**

**인천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심사규칙**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 위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2(15)에 의거, 인천

15)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에서 2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음.
- 더욱이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라는 요건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라 여겨짐. 이렇게 볼 때 2호 규정은 오히려 불필요함.
- 동구의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부평구의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옹진군의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2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증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4편 총무**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서 4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에 여성이 해당될 확률은 남성이 해당될 확률보다 현저히 적음. 또한 ‘조교수 이상’이라는 요건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직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더욱이 5호에서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4호 규정의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있음. 이에 4호 규정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95조의2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같은 이유로 ‘조교수 이상’이라는 요건은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됨.
- 동구의 동구구세조례, 부평구의 부평구세조례, 강화군의 강화군군세조례, 용

진군의 옹진군군세조례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제4편 총무**

**인천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91조(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2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세무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규칙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위조항에서 5호는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부교수 이상” 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부교수 이상’ 이라는 요건이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반증의 여지없이 보증한다고 보기 어렵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자격을 ‘부교수 이상’ 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6호에서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고 한 요건이 오히려 전문성을 보증할 뿐 아니라 5호의 내용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구를 제외한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세부과정수규칙에서도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제17편 읍·면·리  
강화군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보하며 당해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리장의 확인을 받아 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 위 조례는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반장 위촉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제2항에서는 반장의 자격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활동력이 있는 자” 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위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일반예비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성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강화군반운영규칙 제5조와 연동하여 결과적 차별의 소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강화군반운영규칙 제5조에서는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남자반장 적격자가 없는 지역’ 에서는 가급적 반장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반장이 될 수 있는 자가 우선 남성이라는 전제 하에 여성 참여가 많고 남자반장 적격자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할 경우에 여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됨.<sup>16)</sup>
- 옹진군의 반설치조례와 반운영규칙에도 이와 동일한 명시가 있어 결과적 차

16)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병역 의무 부과는 자치법규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이는 본 연구의 주된 논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기로 함.

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구와 동구의 경우는 중구통·반설치조례에서 강화군반설치조례와 같은 차별적 조항이 발견되었음.

- 부평구의 통·반설치조례에는 위와 같이 차별적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제17편 읍·면·리**

##### **강화군이장임명예관한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이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里)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 위 규칙은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그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라는 요건을 포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이장의 자격은 2호와 3호의 내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위 요건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용진군의 이장임명예관한규칙에서도 이와 동일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제4편 재무**

##### **용진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군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웅진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은 매우 구체적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1호와 3호임.
-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일 경우가 많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배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요건이 결과적 차별이 아니기 위해서는 ‘사업상 필요성’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조교수 이상’ 이라는 기준은 전문성을 입증하는 기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1호 후반부의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와 4호의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는 요건만으로도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교수 이상’ 이라는 기준은 결과적 차별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정임.
- 3호의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사람이 반드시 ‘5급 이상’ 의 고위 직급이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려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결과적 차별로 판단할 수 있음.
- 이 외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적 차별의 소지와 함께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조례들도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부분과 동일함.

**제1편 의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체인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의회위원회조례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 및 연령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제1편 의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각 전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의회회의규칙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결과적 차별 및 연령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제4편 총무**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 위 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다음의 <별표1의2>에 정하고 있음.

**[별표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 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 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 앞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검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응시연령 규정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음.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도 마찬가지임.

**제4편 총무**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3조(신규임용)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 동구, 부평구, 옹진군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도 모두 위와 같이 연령차별의 소지가 발견되었음.
- 단, 옹진군에서는 “18세 이상 40세까지” 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 합리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강화군에서는 2000년 12월 조례 개정시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강화군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연령 제한이 ‘사업상 필요성’ 을 갖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Ⅵ.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 가치관

### 1)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 제6편 자치행정

####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제2조(수상부문) ① 시민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0인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6인이내
2. 효행상 1인이내
3. 산업발전상 3인이내
  - 가. 상공업분야 2인이내(사용자 1인, 근로자 1인)
  - 나. 농수산분야 1인이내

- 위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상부문 중 ‘효행상’이 있는데, 위 조례 제3조에서는 효행상 수여자가 “존속에 대한 효행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충, 효, 신 등은 남성들의 가치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부계중심사회에서 특히 효의 경우 그것을 행하는 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음. 이를 고려할 때 효행상 수여는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중구에서는 2003년 8월 1일 효행상을 폐지하였고,<sup>17)</sup> 강화군에서는 “자랑스런강화인상” 수여대상자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음. 예컨대, 대내외적인 지역의 위상과 군의 명예를 선양한 군민과 단체, 아무런 대가나 바램없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민과 단체, 사회저변에서 남모르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군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언론기관을 통해 그 활동이 널리

17)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제2조.

소개된 사람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찬사를 받는 숨은 일꾼으로서 강화군의 위상을 드높인 군민과 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sup>18)</sup>

- 다른 구의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시민상 수상부문에 효행상이 존속되어야 하는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제7편 여성복지보건**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 모자복지 및 요보호자선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 조례는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보호자’ 라는 표현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어디에서도 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비단 여성복지보건과 관련한 규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이며 전근대적 사고에서 기인함.
- 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요보호자’ 라는 규정은 흔히 정상가족이 아니면서 빈곤하거나 저학력이면서 빈곤한 집단을 가리켜왔으며, 이들을 시혜적 차원의 복지 대상,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게다가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요보호자’로 규정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어왔던 사실도 있음.

18)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 제6조.

호여성’으로 규정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함.

- 특히 이 조례의 목적이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용어의 폐기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2) 군구 자치법규

### 제2편 기획감사

####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0. 요보호 여성 선도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의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과장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20호에 명시된 ‘요보호 여성 선도’라는 내용은 앞서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동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부녀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41호), 부녀단체 육성 지원(42호), 부녀교실 운영 및 여성교육(43호), 윤락여성, 요보호여성 선도 및 직업보도(44호),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45호) 등을 사회복지과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부녀’, ‘윤락여성’, ‘요보호여성’ 등의 표현은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 가치관을 내포하는 것으로 시급히 폐기 또는 변경되어야 할 것임.
- 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조(여성과장 분장 사무) 5호의 ‘요보호여성 관리 및 선도’,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사회복지과장 분장 사무) 49호의 ‘요보호여성 선도 및 직업보도’, 옹진군 행정기

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사회복지과장 분장 사무) 34호의 ‘요보호여성 선도 및 직업훈련’ 등의 표현도 시급히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함.

**제3편 문화공보**

**인천광역시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sup>19)</sup>에 의거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고 있는 제2조에서 1호에 명시되어 있는 ‘윤락행위’라는 표현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성매매’로 바꾸어야 함.
-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명시했던 ‘윤락행위’, ‘윤락여성’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를 내포할 뿐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의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었음. 이에 이 용어들이 내포한 성차별성과 사회적 낙인

19)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개정 1999.2.5>) ①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신설 1999.2.5>

효과는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개정된 법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및 구군의 자치법규에서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구와 부평구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도 “윤락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강화군의 경우는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만 아니라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화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제3조 3호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 용진군의 경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없음. 단, 여성상담소의 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용진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제1조와 제3조에서 ‘요보호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VII. 강행규정으로의 변경 필요

### 제6편 자치행정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③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3. 27 개정)

- 위 조례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을 규정한 제23조에서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단체의 자치법규에서도 현재와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이 청구하는 때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 뿐 아니라, 중구, 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의 지방공무원조례에서 나타나는 공통 사항임.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2003.
- 김경희.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 미국 AT&T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승욱. “여성고용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율.” 『노동법학』 제17호, 2003, pp. 25~68.
- 정금나. “고용 차별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조순경 편,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정금나. “고용에서의 성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판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순경·김선옥·정경아·정형옥·한승희.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2.
- 조순경·최성애·국미애. 『금융산업 여성노동자의 차별 실태 및 대응방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고용평등위원회, 2004.
-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 한승희. “고용상의 간접차별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EEOC. Theories of Discrimination, 1995.
- Hunter, Rosemary.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Federation Press, 1992.

Sauls, John Gales. Proving Business Necessity: The Disparate Impact Challenge, 1995, <http://www.lectlaw.com/files/emp35.html>.

신문 및 기타 자료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8일자. “ ‘하나은행 성차별’ / 사무직엔 남성 93% · 창구직엔 여성 98%.”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genl\\_html/search.jsp](http://www.kinds.or.kr/genl_html/search.jsp).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http://www.ccourt.go.kr/information/precedent.asp>.

## <부록> 검토 대상 조례 및 규칙 목록

인천광역시	
<p><b>제1편 의회</b>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의회예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공인조례                      인천광역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인천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인천광역시의회고문번호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p> <p><b>제2편 공보</b>                      인천광역시보조례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p> <p><b>제3편 감사</b>                      인천광역시자체감사규칙                      인천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인천광역시관용심사운영절차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p> <p><b>제4편 정책투자진흥</b>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p> <p><b>제5편 기획관리</b>  <b>제1장 기획</b>                      인천광역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인천대학교운영조례                      인천전문대학운영조례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규칙                      인천대학교지방대학특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회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p> <p><b>제2장 직제</b>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p> <p><b>제3장 사무위임</b>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p>

## 인천광역시

### 제4장 예산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인천광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인천광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예산성과관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제5장 법무

인천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행정법규상당실조례  
 인천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제6장 정보화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기금운용및관리규칙  
 인천광역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

### 제6편 자치행정

#### 제1장 총무

인천광역시기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인천광역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인천광역시시민의날조례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2장 인사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청원경찰징계규칙  
 인천광역시직무대리규칙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포상조례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  
 당지급에관한규칙

### 제3장 교육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  
 인천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 제4장 자치행정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인천광역시공무원제안규칙  
 인천광역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  
 정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공인조례  
 인천광역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 제5장 세정

인천광역시세조례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금고운영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

### 제6장 회계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 제7편 여성복지보건

#### 제1장 사회복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영아보육조례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  
 치계약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  
 인천광역시경로당지원조례

####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 제3장 여성정책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인천광역시

<p><b>제4장 보건위생</b>          인천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규칙          지방공사인천의료원설치조례          인천광역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p> <p><b>제8편 경제통상</b>  <b>제1장 경제정책</b>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인천광역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기준규칙          인천광역시고압가스사업소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p> <p><b>제2장 국제통상</b>          인천광역시명예시장추대조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인천광역시국제자문관위촉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위촉및운영조례</p>	<p><b>제3장 산업노사지원</b>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          인천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규칙          인천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영조례</p> <p><b>제4장 농정</b>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p> <p><b>제9편 건설교통</b>  <b>제1장 건설방재</b>          인천광역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인천광역시제4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인천광역시제5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인천광역시제6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인천광역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p>
---	---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하천공유수면정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  
행규칙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정용료등징수조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공존하수처리장설치·운영및위탁관리  
에관한조례

### 제2장 교통기획

인천광역시교통인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지하부토도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인천광역시광역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  
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  
시설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3장 도로

인천광역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가로명예관한조례

인천광역시보도구역및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  
규칙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로정용료징수조례

### 제4장 대중교통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  
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 제5장 주차관리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  
립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

인천광역시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 제10편 문화관광체육

#### 제1장 문화예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립도서관사용조례

인천광역시립도서관열람규칙

인천광역시립박물관사용조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인천광역시립시민회관설치조례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인천광역시은울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

### 제2장 관광정책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설치조례

### 제3장 체육진흥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제11편 도시계획

#### 제1장 도시계획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개성창조사업운영관리조례

#### 제2장 개발계획

인천광역시도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도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  
인천광역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도지구획정  
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도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도지구획정리지구공공용지부  
담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도지구획정리사업지구체비지  
등매각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및토지  
가격산출규칙  
인천광역시도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  
조례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  
계설치조례

#### 제3장 주택건축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인천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 제4장 지적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  
등에관한조례

### 제12편 환경녹지

#### 제1장 환경보전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인천광역시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수렵강습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 제2장 청소행정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  
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  
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  
행규칙

## 인천광역시

### 제3장 수질보전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지하수관리조례

### 제4장 녹지조경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 제13편 항만공항물류

#### 제1장 항만공항지원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여객선운임지원조례

#### 제2장 항만공항물류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장 수산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어항시설사용료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불우어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불우어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4편 직속기관

#### 제1장 소방본부

인천광역시화재예방조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소방항공대운영규칙  
인천광역시소방합정운영관리규칙  
인천광역시구급대책협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119구조대구조장비보유규칙

#### 제2장 공무원교육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 제3장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 제4장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5편 사업소

#### 제1장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 제2장 검단개발사업소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연회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도시계획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p>인천광역시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도시계획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도시계획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유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유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인천광역시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p> <p><b>제3장 도시철도기획단</b></p> <p>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p> <p>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p> <p>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규칙</p> <p>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p> <p><b>제4장 종합문화예술회관</b></p> <p>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p> <p>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p> <p>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p> <p>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p>	<p><b>제1편 의회</b></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공인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치에관한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중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p> <p><b>제2편 기획감사</b></p> <p><b>제1장 기획</b></p> <p>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p> <p><b>제2장 직제</b></p> <p>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p> <p><b>제3장 사무위임</b></p> <p>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규칙</p>

## 중구

인천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제4장 예산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인천광역시중구예산성과감심사위원회운영규칙

### 제5장 법무

인천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차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법제사무처리규칙

### 제6장 감사

인천광역시중구자재감사규칙  
 인천광역시중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중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인천광역시중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 제7장 통신

### 제8장 전산

인천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편 문화공보

#### 제1장 공보

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

#### 제2장 문화체육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4편 총무

#### 제1장 총무

인천광역시중구기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민의날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인천광역시중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공무원제안규칙  
 인천광역시중구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의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 중구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2장 인사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3장 급여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제4장 규정

인천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중구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중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제5장 회계

인천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인천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 제6장 재산관리

인천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관용차량관리규칙

### 제7장 세무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인천중구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

### 제8장 민원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인천광역시중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인천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9장 지적

인천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인천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인천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 중구

<p>인천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 <p><b>제10장 민방위</b></p> <p><b>제5편 사회산업</b></p> <p><b>제1장 사회복지</b></p> <p>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험심의위원회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b>제2장 환경관리</b></p> <p>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p> <p><b>제3장 위생</b></p> <p>인천광역시중구부정불량식품및퇴·변태신고보상금지급조례</p> <p><b>제4장 지역경제</b></p> <p>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 <p>인천광역시중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p> <p><b>제5장 농림진흥</b></p> <p>인천광역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p> <p><b>제6장 보건</b></p> <p>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가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p> <p><b>제6편 도시</b></p> <p><b>제1장 건설</b></p> <p>인천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중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p>
---	--

중구	동구
<p>인천광역시중구도로무단정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인천광역시중구도로무단정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p> <p><b>제2장 건축</b>  인천광역시중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p> <p><b>제3장 도시개발</b>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인천광역시중구운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p> <p><b>제4장 관광교통</b>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중구도선장관리조례</p>	<p><b>제1편 의회</b>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강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기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중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p> <p><b>제2편 기획감사</b>  <b>제1장 기획</b>  인천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p> <p><b>제2장 직제</b>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p>

## 동구

### 제3장 사무위임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  
 인천광역시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

### 제4장 예산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5장 법무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제6장 감사

인천광역시동구자체감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인천광역시동구관용심사운영절차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 제3편 문화공보

#### 제1장 공보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 제2장 문화청소년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

#### 제3장 체육지원

인천광역시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 제4편 행정자치

#### 제1장 서무

인천광역시동구기구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동구

### 제2장 인사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3장 급여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비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제4장 규정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행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5장 사회지도

인천광역시동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제안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 제6장 주민자치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동구통·반장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7장 회계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

### 제8장 관재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 제9장 정보관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0장 세무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

### 제11장 인원봉사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

## 동구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2장 지적

인천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인천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 제5편 사회경제

#### 제1장 경제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2장 청소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 제3장 사회복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시행규칙

#### 제4장 환경위생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5장 보건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6편 도시

#### 제1장 건설

인천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 제2장 교통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제3장 건축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동구	부평구
<p><b>제4장 도시정비</b>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p>	<p><b>제1편 의회</b>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의원청원심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p> <p><b>제2편 기획감사</b>  <b>제1장 기획</b>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p> <p><b>제2장 직제</b>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p> <p><b>제3장 사무위임</b>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p>

## 부평구

<p>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p> <p><b>제4장 예산</b>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p> <p><b>제5장 법무</b>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p> <p><b>제6장 감사</b> 인천광역시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자체감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p> <p><b>제7장 전산</b>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p>	<p><b>제3편 문화공보</b> 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명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p> <p><b>제4편 총무</b> <b>제1장 총무</b>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포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의날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p> <p><b>제2장 인사</b>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p>
---	---

## 부평구

<p>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 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p> <p><b>제3장 급여</b>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p> <p><b>제4장 규정</b>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인천직할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인천직할시북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북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정서비스현장제정및운영조례</p>	<p>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p> <p><b>제5편 세무</b>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세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규칙</p> <p><b>제6편 경영재정</b> <b>제1장 회계</b>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인천광역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금관등의관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p> <p><b>제2장 경영수익</b>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 용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심정1동관상복합건물임대관 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 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p> <p><b>제3장 재산관리</b>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p>
--	---

## 부평구

<p><b>제7편 시민봉사</b>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p> <p><b>제8편 사회복지</b>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지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p>	<p>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p> <p><b>제9편 보건환경</b>  <b>제1장 보건위생</b>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 <p><b>제2장 환경관리</b>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p> <p><b>제10편 경제교통</b>  <b>제1장 산업경제</b>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	--

## 부평구

<p>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p> <p><b>제2장 기업지원</b>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p> <p><b>제3장 교통행정</b>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p> <p><b>제11편 도시건설</b>  <b>제1장 건설·건축</b>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주택건설촉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p>	<p><b>제2장 도시정비</b>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육외광 고물등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원운동시설관리및운영조례</p> <p><b>제3장 지적</b>          인천광역시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p>
---	--

## 강화군

<p><b>제1편의회</b>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강화군의회공인조례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강화군의회의원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강화군의회기조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p> <p><b>제2편기획감사</b>  <b>제1장기획</b>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강화군기획업무규칙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p> <p><b>제2장직제</b>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강화군사무위임조례  강화군사무위임규칙  강화군사무전결처리규칙</p>	<p><b>제3장법무</b>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강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강화군고문번호사조례  강화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p> <p><b>제4장예산</b>  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강화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p> <p><b>제5장감사</b>  강화군자체감사규칙  강화군사무인계인수규칙  강화군청원경찰징계규칙  강화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p> <p><b>제6장정보통신</b>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p><b>제3편문화관광</b>  <b>제1장공보</b>  강화군군기조례  강화군군민헌장조례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강화군군보발행규칙</p> <p><b>제2장문화예술</b>  강화군군민의날조례  강화군문예회관설치조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p>
---	---

## 강화군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물설치조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 제3장 문화재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강화군지방유형문화재관리및사용조례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

### 제4장 체육청소년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  
 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회에관한조례  
 강화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4편 행정지원

#### 제1장 총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강화군공인조례  
 강화군공인조례시행규칙  
 강화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강화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강화군읍·면중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규칙  
 강화군제안규칙

#### 제2장 인사·자치행정

강화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강화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강화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강화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강화군포상조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시행규칙  
 강화군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강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장 급여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  
 강화군공수의여비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강화군부업대학생실비변상조례  
 강화군지방교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  
 급에관한규칙

#### 제5편 재무

##### 제1장 세무

강화군군세조례  
 강화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강화군수입증지조례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강화군세감면조례  
 강화군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강화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 제2장 회계

강화군재무회계규칙  
 강화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강화군

<p><b>제3장 재산관리</b>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강화군관용차량관리규칙  강화군물품관리조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p> <p><b>제6편 민원허가</b>  <b>제1장 민원</b>  강화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음·면위임조례  강화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p> <p><b>제2장 부동산관리</b>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강화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강화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강화군국도의계획및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로부과·징수규칙</p> <p><b>제7편 사회복지</b>  <b>제1장 사회복지</b>  강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강화군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규칙  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p>	<p><b>제2장 가정복지</b>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p><b>제3장 위생관리</b>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p> <p><b>제8편 환경녹지</b>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강화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p> <p><b>제9편 농수산</b>  강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사한곡관리조례  강화군사한곡관리규칙</p> <p><b>제10편 경제교통</b>  <b>제1장 지역경제</b>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강화군도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  강화군도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강화군공설시장설치조례  강화군시장사용조례</p>
---	---

## 강화군

<p><b>제2장상공연료</b> 강화군지방공급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b>제3장교통</b>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p> <p><b>제11편건설</b> <b>제1장건설행정</b> 강화군골재유탁판매에관한조례</p> <p><b>제2장방재기반조성</b>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강화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과사용료징수조례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p> <p><b>제3장토목도로</b> 강화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강화군가로명에관한조례</p> <p><b>제12편도시개발</b> <b>제1장도시행정</b></p>	<p>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 강화군건축조례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강화군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p> <p><b>제2장지역개발</b>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강화군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강화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p> <p><b>제13편 주민자치</b>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 강화군향토우수인력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p> <p><b>제14편농업기술</b>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강화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강화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 강화약썩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강화약썩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p>
--	---

강화군	용진군
<p>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p> <p><b>제15편보건</b>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  강화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강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강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강화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p> <p><b>제16편관광개발</b>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p> <p><b>제17편읍·면·리</b>  <b>제1장읍·면</b>  강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강화군명예읍면장조례</p> <p><b>제2장리·반</b>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강화군리장징수조례  강화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강화군리개발위원회조례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강화군반설치조례  강화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강화군리직제규칙  강화군반운영규칙</p>	<p><b>1편의회</b>  용진군의회위원회조례  용진군의회공인조례  용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용진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용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용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용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용진군의회회의규칙  용진군의회청원심사규칙  용진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용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용진군의회포상규칙  용진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p> <p><b>제2편기획감사</b>  <b>제1장기획</b>  용진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용진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용진군기획업무규칙  용진군제안규칙  용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용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용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용진군사무위임조례  용진군사무위임규칙  용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  용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용진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p> <p><b>제2장예산</b>  용진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용진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용진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p>

## 용진군

용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용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용진군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 제3장감사

용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자체감사규칙  
 용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용진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 제4장홍보

용진군군민헌장조례  
 용진군군기조례  
 용진군군민의날조례  
 용진군군보발행규칙

### 제5장확인평가

용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용진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용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용진군고문번호사조례  
 용진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용진군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 제6장정보관리

용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용진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규칙  
 용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3편주민자치

#### 제1장총무

용진군공인조례  
 용진군공인조례시행규칙  
 용진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용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용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2장행정

용진군청및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용진군승림면명칭변경에관한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용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용진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용진군포상조례  
 용진군군민상조례  
 용진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용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용진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용진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용진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용진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용진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용진군청원경찰징계규칙  
 용진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용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3장관광체육

용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용진군향토유적보호조례  
 용진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용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청카누선수단설치운영조례  
 용진군청카누선수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용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용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용진군지명위원회조례  
 용진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용진군지방직영기업설치조례

## 용진군

<p>용진군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p> <p><b>제4장자치운영</b>          용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용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진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p> <p><b>제5장허가민원</b>          용진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          용진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용진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p> <p><b>제4편재무</b></p> <p><b>제1장세정</b>          용진군군세조례          용진군군세감면조례          용진군군세부과징수규칙          용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용진군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용진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p> <p><b>제2장경리</b>          용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보조금관리조례          용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용진군물품관리조례          용진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용진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용진군여비조례          용진군재무회계규칙</p> <p><b>제3장 청사시설</b>          용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p>	<p>용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용진군복지관조례          용진군관용차량관리규칙</p> <p><b>제4장부동산관리</b>          용진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용진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과태료징수규칙          용진군국도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용진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p> <p><b>제5장세무심사</b>          용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진군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          용진군수입증지조례</p> <p><b>제5편사회복지</b></p> <p><b>제1장사회복지</b>          용진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용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용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용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용진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용진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진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용진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진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p>
---	--

## 용진군

<p><b>제2장 여성청소년</b>          용진군청소년육성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용진군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용진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용진군아동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p> <p><b>제3장 위생지도</b>          용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p> <p><b>제6편 환경녹지</b>  <b>제1장 청소</b>          용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용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용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용진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          을위한조례</p> <p><b>제2장 상하수도</b>          용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p> <p><b>제7편 산업경제</b>  <b>제1장 농업진흥</b>          용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p> <p><b>제2장 축산</b>          용진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공수의조례</p> <p><b>제3장 기반조성</b>          용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용진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용진군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용진군수리계관리조례</p> <p><b>제4장 상공전기</b>          용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p>	<p>용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          규칙          용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용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          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용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          용조례</p> <p><b>제5장 교통행정</b>          용진군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용진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p> <p><b>제8편 해양수산</b>  <b>제1장 해양시설</b>          용진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          용진군도선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p> <p><b>제9편 건설</b>  <b>제1장 건설행정</b>          용진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p> <p><b>제2장 지역계획</b>          용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용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p> <p><b>제3장 도목</b>          용진군가로명에관한조례          용진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용진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용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용진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          징수조례          용진군관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용진군관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p>
--	---

## 용진군

### 제4장주택건축

용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용진군건축조례  
 용진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  
 조례

### 제5장재난관리

용진군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용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용진군수방단운영조례  
 용진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  
 용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6장도서개발

용진군덕적면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진군덕적면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0편보건

용진군보건소수가조례  
 용진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용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용진군병원선운영조례  
 용진군병원선운영조례시행규칙  
 용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용진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  
 수규칙

### 제11편농업기술

용진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  
 용진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용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  
 행규칙

### 제12편관광자원개발

#### 제1장관광지도

용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진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  
 행규칙

### 제12편관광자원개발

#### 제1장관광지도